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64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이건태・박지원・이수진

곽상언 · 장종태 · 조인철

송재봉 • 이개호 • 양문석

김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제2항에서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잘못된 수사를 공소 제기 단계에서 통제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하여 공소 유지는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 유지 참여로 인해 잘못된 수사가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무리한 공소 유지가 계속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같은 부나 같은 차장검사 소속인 검사 역시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할 수 없게 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를 "공소의 제기 및 그유지를 할 수 없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소속된 부 또는 차장 소속의 다른 검사(부장검사를 포함한다) 역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검사가, 부가 1개인 경우에는 부장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다른 부는 있으나 차장검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부 소속의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검사의 직무) ① (생 략) | 제4조(검사의 직무) ① (현행과 |
| | 같음) |
|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 2 |
| 범죄에 대하여는 <u>공소를 제기</u> | <u>공소의 제기</u> |
| <u>할 수 없다</u> . 다만, 사법경찰관 | 및 그 유지를 할 수 없고, 수사 |
| 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 를 개시한 검사가 소속된 부 |
| 러하지 아니하다. | 또는 차장 소속의 다른 검사 |
| | (부장검사를 포함한다) 역시 같 |
| | <u>다</u> |
| | |
| <u><신 설></u> |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
| |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소속된 |
| | 검찰청에 부가 없는 경우에는 |
| | 다른 검사가, 부가 1개인 경우 |
| | 에는 부장검사가 아닌 다른 검 |
| | 사가, 다른 부는 있으나 차장검 |
| | 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부 |
| | 소속의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
| |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
| <u>③</u> (생 략) |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